

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2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3. 28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3. 2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4. 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재무과장 오은겸)

가. 개정이유

- 군세 감면 일몰기한 경과로 종료될 예정인 감면 조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,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조항을 삭제 ·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: 2024년 12월 31일→ 2027년 12월 31일(3년)
 - ‘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’ (안 제2조)
 - ‘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’ (안 제7조)
 - ‘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’ (안 제9조)
- 2)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감면 조항 삭제(안 제9조의2, 안 제9조의3, 안 제9조의4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」

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6952호(2025. 2. 19.)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358호

- 예고기간: 2025. 2. 20. ~ 2025. 3. 12.(20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○ 「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」의 일몰 기한(2024. 12. 31.) 경과로 종료되는 감면 조항 중 세제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, 감면 목적을 달성한 조항을 삭제·정비하고자 함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군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(안 제2조, 안 제7조, 안 제9조)
 -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,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,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일몰 기한을 연장하였음.
-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감면 조항 삭제(안 제9조의2~제9조의4)
 -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,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,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등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음.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2024. 12. 31.자로 일몰이 경과한 군세 감면조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, 코로나 19 종료에 따라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 19 관련 감면 조항 삭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4. 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